



전국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 농가가 원하는 적기 출하
- 경매 상장 수수료 無
- 운송비 절감
- 하자육 발생시 농가 손실 방지제도 운영



• 한 차(8두 기준) 출하, 100만원 이상 이득 ⇒ **농가수익개선**

전국한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유통망은 부산물 제값받기와 적기출하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한우협회 전용 도축유통망입니다.
경매 상장수수료가 없고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영안정에 유익합니다.

◆ 출하 신청방법 (☎ 02-525-1053)

- 담당 : 유통사업국 박호경 과장(내선 207)
- 시기 : 출하 계획 14일~30일전 협회로 신청
- 접수 : 중앙회 담당직원 연락 또는 시군지부 접수
- 팩스 : 02-525-1054



◆ 정산기준

구분	거세우	암소	비고
출하규격 (지육중량)	28개월령 이상 36개월령 이하 380Kg이상 600Kg이하	28개월령 이상 60개월령 이하 300Kg이상 550Kg이하	※ 등심단면적 기준 (거세) 86cm ² 이상 (암소) 76cm ² 이상
가격적용 기준	음성공판장 화,수,목 평균가	음성공판장 화,수,목 평균가	
부산물	두·내장·우족은 농협 음성공판장 가격 적용		우피는 당해 도축장 가격에 따름
하자육 처리	근출혈 보상보험 두당 8,500원		하자육 금액이 Kg당 1,000원 이상으로 발생시 일부 자부담 발생
출하장려금	(거세, 두당 7만원) 도체중 420Kg~560Kg이하, 월령 30~36개월이하, 등심단면적 86cm ² 이상 (암소, 두당 12만원) 도체중 350Kg~550Kg이하, 월령 30~60개월이하, 등심단면적 76cm ² 이상		



전국한우협회